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 시행령」

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449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	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908호, 2022. 9. 15., 일부개정]
<p>제155조의2(국제항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<p>3.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</p> <p>가. 공항의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</p> <p>나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55조의2(국제항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</p> <p>가. 공항의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6조(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	<p>제246조(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